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17/2564 호

태국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

관련 육성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를 태국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 관련 육성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을 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 18항, 31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함

1. 투자촉진에 대한 승인을 받은 회사의 경우 태국 증권 거래소에 등록된 31조 1항에 의거하여 대체 투자 시장(mai)으로 인한 투자금의 100%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법인세 면제에 대한 추가 권리 및 혜택(토지 및 순환자본 제외)을 받게 됨
2. 투자촉진에 대한 승인을 받은 회사가 사업 소득이 생기면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31조 1항에 의거하여 요청할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면제에 대한 기간과 금액이 해당됨
3. 회사는 태국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에 투자촉진을 신청하기전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날짜는 태국 증권 거래소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에 상장된 날짜를 의미하며 태국 증권 거래소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는 회사의 보통주를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명령을 하게 됨
4. 또한 2022년의 마지막 영업일 이내에 본 법안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신청 해야함
5. 태국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대체 투자 시장(mai)에 대하여 이 안내문의 통지가 발효일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법안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림

2021년 2월 10일부터 적용

2021년 3월 29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